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가맹탈퇴 규정

제정 2007.03.30.
개정 2010.07.06.
개정 2014.06.25.
개정 2019.06.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에 의하여 가맹단체의 가맹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5., 2019.6.24.>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25.>

1. “가맹”이라 함은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하여 장애인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6.25.>
 2. <개정 2014.6.25.> 삭제 <2019.6.24.>
 3. “정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가맹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동의하여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된 가맹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6.25.>
 4. “준가맹 단체”는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의결로써 준가맹을 승인받아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제한적으로 적용받는 가맹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6.25.>
 5. “인정단체”는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6.25.>
 6. “탈퇴”라 함은 장애인체육회에 의해 가맹을 승인받은 경기단체가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가맹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6.24.>
- ② 종목별 경기단체라 함은 종목별로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경기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4.6.25.>
- ③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라 함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중앙단체에 서울특별시를 대표하여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4.6.25.>

제2장 가 맹

제3조(가맹구분) ① 가맹단체는 정가맹 및 준가맹 단체로 구분한다. <개정 2014.6.25.>

② 장애인체육회는 가맹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제5조의 가맹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장애인체육회 규약 제6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여 준가맹 단체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명시된 승인조건을 준수해야한다. <개정 2014.6.25.>

③ 장애인체육회는 필요한 경우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장애인체육회와의 권리 및 의무관계가 없는 인정단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명시된 승인조건을 준수해야한다. <개정 2014.6.25.>

④ 장애인체육회는 준가맹 단체의 정가맹에 대하여 준가맹 승인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재심의 할 수 있으며,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4.6.25.>

제4조(가맹신청서류) 장애인체육회에 가맹코자 하는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상정할 대의원총회 3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경우 다음 제5호, 제7호는 제외한다. <개정 2014.6.25.>

1. 가맹신청서(「별표」장애인체육회 소정양식) <개정 2014.6.25.>
2. 단체연혁
3. 단체의 임원명단(취임승낙서 및 이력서첨부)
4. 단체정관(규약) <개정 2014.6.25.>
5.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6. 구지부 및 장애유형별분과위원회 설치현황 <개정 2014.6.25.>
7. 선수 또는 팀 등록현황
8.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9.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10. 가맹신청을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
11. 당해 단체의 국제장애인체육기구의 참고자료
12.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중앙가맹단체의 시·도 지부 인증서

제5조(가맹요건) ① 장애인체육회 가맹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1.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당해 유일의 종목별 경기단체나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일 것 <개정 2014.6.25.>
2. 서울특별시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별 경기단체나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일 것 <개정 2014.6.25.>
3.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중앙가맹단체의 시·도 지부인 단체일 것 <개정 2014.6.25.>
4.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공인종목이거나 국제장애인체육기구가 인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기종목일 것. 다만, 경기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2019.6.24.)

5. 당해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개정 2014.6.25.>

6. 종목별 경기단체는 장애유형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장애유형 종목이 패럴림픽대회·농아인올림픽대회·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이 아닐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6.25.> <개정 2019.6.24.>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장애인체육회가 가맹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③ 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가맹단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관(규약)이 제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4.6.25.>

제6조(심의절차) ① 가맹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장애인체육회 규약 제7조에 의한다. <개정 2014.6.25.>

② 준가맹단체 및 인정단체의 지정은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서 승인한다. <개정 2014.6.25.>

제7조(제한사항) ①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라 할지라도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의무사항 및 지시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지원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② 이 규정 제3조2항에 의한 준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사항 중 대의원 파견권이 없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장애인체육회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제8조(탈퇴요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에서 탈퇴케 한다. <개정 2014.6.25.>

1. 가맹단체가 해산하거나 탈퇴를 요청하였을 경우
2. 제5조의 가맹요건을 상실하여 가맹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3. 가맹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장애인체육회 규약,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가맹단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4.6.25.>
4.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및 임원의 권위와 지도력 결여 등의 사유로 가맹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장애인체육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장애인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개정 2019.6.24.>

제9조(탈퇴신청) 가맹단체가 탈퇴코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신청서

2. 탈퇴사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의 회의록(법인인 경우는 이사회 회의록)

제10조(관리단체 지정) 가맹단체를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6조에 의하여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부 칙 <2007.8.2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7.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6.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4.6.25>

[illegible]